

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문성호 의원 (찬성자 17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2614 호

다. 발의일자 : 2025. 3. 31.

라. 회부일자 : 2025. 4. 2.

2. 제안이유

- 최근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.
-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에 따라 국제경기 진행이 어렵고, 이를 이용하는 선수들의 부상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할 것임.
- 이에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포함한 대행사업 시설물들에 대해 안전한 환경과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가. 이사장 관련(안 제8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공기업법」,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원안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25. 04. 05. ~ 04. 09.) 결과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설공단(이하 ‘공단’)이 대행사업으로 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물을 관리·운영함에 있어 이사장으로 하여금 안전한 환경과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이사장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 ③ (생략)	제8조(이사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이사장은 체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대행사업 관리·운영에 있어 안전한 환경과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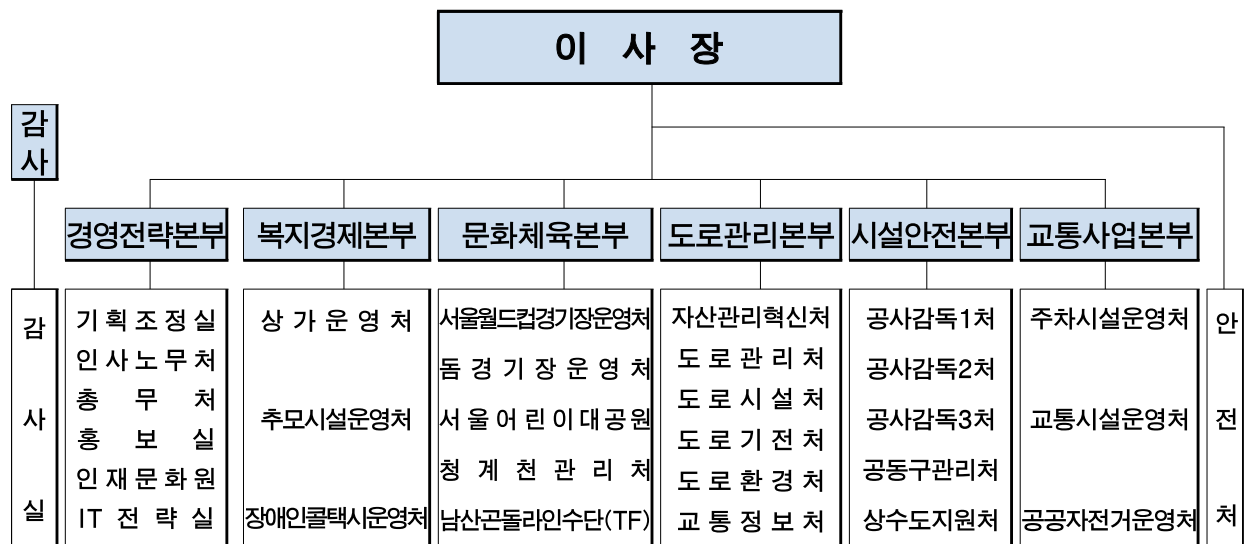
■ 서울시설공단 현황

- 공단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¹⁾ 및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1983년 9월 1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, 서울특별시장의 지정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- 공단은 이사장 산하에 감사와 6개 본부(경영전략본부, 복지경제본

1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(설립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

부, 문화체육본부, 도로관리본부, 시설안전본부, 교통사업본부), 29개 처·실·원 및 1개 TF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인력 규모는 정원 3,897명, 현원 3,725명으로, 이 중 약 94%는 장애인 콜택시 및 자전거(따릉이) 사업의 관리·운영 등을 담당하는 현장관리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.



[그림] 서울시설공단 조직 현황

-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‘자체사업’²⁾을 할 수 있으며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‘대행사업’을 수행³⁾할 수 있음에 따라
- 현재 공단은 서울시 10개 실·국·본부와 연계하여 ▲복지·경제 ▲문화·체육 ▲도로·교통 ▲시설안전 등에 대한 총 24개의 대행사업을 운영중에 있음([그림] 참조).

2)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8조(자체사업)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.

3)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(대행사업)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.

사업별 서울시 주무부서 및 시의회 상임위원회 현황

【사 업】	【주 무 부 서】	【상 임 위 원 회】
지 하 도 상 가	재 난 안 전 실 (도로기획관 > 도로시설과)	도 시 안 전 건설위원회
자동차전용도로		
공 동 구		
도심지공사감독		
청 계 천 *문화디지털 포함	물 순 환 안 전 국 (치수안전과)	보 건 복 지 위 원 회
시 립 추 모 시 설 *시립승화원, 추모공원	복 지 실 (돌봄고독정책관 > 어르신복지과)	
서 울 상 상 나 라	여 성 가 족 실 (아이돌봄담당관)	
월 드 컵 경 기 장	관 광 체 육 국 (체육정책과)	문 화 체 육 관광위원회
장 충 체 육 관		
고 척 스 카 이 돔		
어 린 이 대 공 원	정 원 도 시 국 (정원도시정책과)	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
상수도공사감독	서 울 아 리 수 본 부 (시설부 > 누수대응과)	
수도계량기검침·교체	서 울 아 리 수 본 부 (요금관리부 > 요금제도과, 계측관리과)	
서울글로벌센터	글 로 벌 도 시 정 책 관 (외국인이민담당관)	기 획 경 제 위 원 회
체 납 징 수 지 원	재 무 국 (38세금징수과)	행 정 자 치 위 원 회
장 애 인 콜 택 시	교 통 실 (교통운영관 > 택시정책과)	교 통 위 원 회 *공단 상임위
공 공 자 전 거	교 통 실 (교통운영관 > 보행자전거과)	
공 영 주 차 장	교 통 실 (교통운영관 > 주차계획과)	
동대문주차장지상상가	교 통 실 (교통운영관 > 주차계획과)	
공 영 차 고 지	교 통 실 (교통운영관 > 버스정책과)	
혼 잡 통 행 료	교 통 실 (교통기획관 > 교통정책과)	
교 통 정 보 제 공	교 통 실 (교통기획관 > 미래첨단교통과)	

[그림]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별 서울시 주무부서 및 시의회 상임위원회 현황

- 한편, 공단이 위탁운영중인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최근 K리그 개막 초기에 잔디 상태 불량으로 인해 선수 부상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기장 관리에 대한 공단의 책임 부족이 문제로 지적⁴⁾됨에 따라
- 이에 서울시와 공단은 예정된 경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장의 잔디 교체 및 생육 개선을 위한 긴급 복구를 진행하고, 불량 잔디 교체를 위한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, 잔디 생육에 필요한 선진장비도 추가 도입하여 잔디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⁵⁾한 바 있음.

■ 개정안에 대한 의견

- 안 제8조제3항은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체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대행사업 관리·운영에 있어 안전한 환경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.
- 공단 이사장은 현행 조례 제8조⁶⁾ 및 「서울시설공단 정관」 제13조⁷⁾에 따라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

4) “논두렁 상암벌‘린가드 분노...서울시설공단엔 개선 민원 폭주’-뉴시스, 2025.3.4.

“잔디에 발목 걸려 넘어지는 K리그” 선수협도 해결 촉구’ 경향신문, 2025.3.4.

5) (서울시 보도자료) ‘서울월드컵경기장, 잔디 긴급 복구 실사...29일 홈경기 전까지 정상화’ - 2025.3.7.

6)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이사장) ① 공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,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

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.

7) 「서울시설공단 정관」 제13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성과에 대해 책임지는 공단의 대표로서, 공단이 대행운영하는 시설물의 유지·관리 또한 이사장의 실질적인 책임 범위라고 할 수 있음.

- 최근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 악화와 관련하여 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실이 보고된 바 있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인 공단이 보다 책임있게 시설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책임론이 공론화되었다는 점에서,
-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이사장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의 책임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명문화된 책임 의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은 현행 조례 및 정관에서 규정하는 이사장 책무의 연장선 상에 있다 할 것이므로 적절한 조치라 사료 됨.
- 또한, 공단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시설을 관리·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리 책임을 조례로 명확히 부여하는 것은 향후 공단의 시설물 관리 수준 향상과 책임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조치라 하겠음.